

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

1.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

1). 계약기간 :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실제입소일로부터 장기요양인 정기간 만료일 까지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.

2). 계약의 목적 : 노인성 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(장기요양급여 수급자)에게 시설급여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자 한다.

3).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은 아래와 같다.

【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(2025년)】

1). 월 이용료

구분	등급	내역	금액(원)	비고
월 이 용 한 도 (보 험 료)	1등급	90,450원*80%*30일	2,170,800	
	2등급	83,910*80%*30일	2,013,840	
	3등급~5등급	79,240*80%*30일	1,901,760	
본 인 부 담 금	1등급	90,450원*20%*30일	542,700	
	2등급	83,910*20%*30일	503,460	
	3등급~5등급	79,240*20%*30일	475,440	
	식재료비(간식포함)	9,600(1일)*30일	288,000	
	상급실이용료	500,000/월(1인실)	500,000	

2). 기타 비용부담

- ① 어르신의 병원진료 및 약 조제를 시설의 직원이 대행할 시 발생하는 병원비 및 약제비
- ② 보호자의 요청으로 인해 시설에서 제공하는 간식 외 추가 간식이나 어르신의 피복 구매를 시설이 대행할 경우 발생하는 비용
- ③ 기타 시설에서 기본 제공 할 의무가 없는 사항에 대하여 발생하는 비용 등

2. 계약자,당사자의 의무 및 권리

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.

1). 서비스제공자의 의무

- ① “을”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(단, 병원 입원 시는 간호,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)
- ② “을”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(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)
- ③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

2). 입소자의 의무

-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
- ②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
- ③ 시설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
- ④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
- ⑤ 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

3). 보호자의 의무

- ①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

②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

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

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

⑤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, 입·퇴소 절차,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

4). 입소자의 권리

① 사생활은 존중되고 보호받으며,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

② 종교와 문화활동의 자유를 보장 받을 권리

③ 간호와 재활서비스가 보장되며 그 치료에 대해 알권리

④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으며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평등과 존경을 받을 권리

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권리 및 불편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

3. 계약의 해제

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1).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

2).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

3).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

4).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

5).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

6).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